

식품중 잔류농약 등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일 본의 후생노동성에서는 2003년 5월 에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3년 법률 제55호)에 의거, 개정된 식품위생법(1974년 법률 제233호)에 따라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사료 첨가물 및 동물약품(이하 「농약 등」이라 한다)에 관한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2006년 5월말까지 도입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의 정비를 하고 법률을 공포한바 있다. 이 제도는 식품위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 기일을 정해진 법령에 따라 2006년 5월 29일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약에 대해서 식품에 잔류하여도 괜찮은 양을 정하여 리스트화 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은 원칙적으로 잔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다. 국제적으로 식용 농산물에 사용이 인정되고 있는 농약수는 800개 정도이다.

○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 원칙적으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 하는것으로 리스트화 하는것이다.

○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 원칙적으로 규제(금지)된 상태에서 사용이 인정되는것에 대해서 리스트화 하는 것으로 「잔류농약 등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을 초과하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량은 0.01ppm

을 설정하고 기준을 일괄 적용한다.

규제 대상 물질은 농약, 동물용 의약품, 사료 첨가물이며, 규제대상 식품은 가공식품을 포함한 전 식품이다.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오레인산 등과 같이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것이나 중탄산소다 등의 특정농약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들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물질(65물질) 또는 천적농약, 미생물 농약 등 재배단계에서 사용되고 잔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로서 이 법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잠정기준의 설정은 국민건강보호와 포지티브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국제기준으로 되어 있는 코덱스 기준과 농약관리법에 근거한 등록보류기준, 외국(미국, 캐나다, EU,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등의 기준으로 한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국가별 사례를 보면 EU는 사용대상의 작물에 잔류할 경우와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0.01ppm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잔류하는 것을 금지한다. 뉴질랜드는 0.1ppm, 독일은 0.01ppm, 미국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운용상 0.01~0.1ppm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식품중 잔류농약 등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현행 규제]

(개정 식품위생법 제11조 관계)

농약,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 의약품

식품 성분에 관한 규격(잔류기준)이 정해져 있는것

250농약, 33동물용 의약품 등에 잔류기준을 설정



잔류기준을 초과하여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금지

식품 성분에 관한 규격(잔류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것



잔류농약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유통의 규제는 없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이행후]

(2006년 5월 29일 시행)

농약,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 의약품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799농약 등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시행 까지 현행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 농약관리법에 근거한 기준, 국제기준, 유럽의 기준 등을 토대로 잠정적인 기준을 설정(잠정기준)



등록과 동시에 잔류기준설정 등 잔류기준설정의 촉진



잔류기준을 초과하여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을 금지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것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으로서 후생노동 대신이 일정량을 고시(0.01ppm) (일률기준)



일정량을 초과하여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을 금지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물질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밝혀진것을 고시(특정농약 등) 65물질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대상 외

예) 현행의 제도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잔류농약, 리스트에 없는 농약의 잔류는 규제할 수 없음
- 해외 등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약 등은 규제할 수 없음

작물명	잔류기준치
토마토	1ppm
오이	2ppm
양배추	0.5ppm
상추	기준치 없음
시금치	기준치 없음
배추	기준치 없음

기준치가 없을 경우 A농약이 어느정도 잔류하여도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화

- 농약이 잔류해도 괜찮은 기준치
-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농약에 대하여 식품 전체에 기준치를 설정
- 적용외 작물을 포함 전 작물을 대상으로 기준치를 설정
- 일본내 등록이 없는 농약도 수입작물에 잔류가능성이 있으면 기준치 설정

작물명	잔류기준치
토마토	1ppm
오이	2ppm
양배추	0.5ppm
상추	일률 기준
시금치	일률 기준
배추	일률 기준

미량으로 검출되어도 규제대상이 된다. 일률 기준→0.01ppm

식품중 불검출되어야 할 농약 등의 일람표

2,4,5,-T, Azocyclotin, Cyhexatin, Amitrole, Captafol, Carbadox including QCA, Coumafos/Coumaphos, Chloramphenicol, Chlorpromazine, Diethylstilbestrol, Dimetridazole, Daminozide, Nitrofurans, Propham, Metronidazole, Ronidazole

포지티브 제도에 대응한 「농약 세미나」 계속 개최

일 본농약공업회는 지난 3월 8일 이사회에서 JA전농, 농림수산항공협회, 녹안전추진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대를 긴밀히 하고 5월 29일부터 실시되는 「포지티브 제도」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적정사용을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다.

동 제도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3년이내에 실행하도록 결정되었다.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에 대해서 식품에 잔류하여도 괜찮은 양을 정하여서 리스

트화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은 원칙적으로 잔류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식용농산물에 사용이 인정되어지고 있는 농약수는 800개 정도이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서 실시되고 있는 「농약의 역할과 안전성」 세미나를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3월 16일 천엽시(동회 관동지부 주최)에서 개최하였고 8월 9일 고베(동회 본부 주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